

1. 개정이유

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및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발급 과정에서 나타난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 실습 조종실습 강사 기준 완화(안 별표18)

- 1)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에서 실습강사의 지정요건을 경력기간 5년에서 2년으로 완화

나.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신청 및 적성검사신청 제출 서류 변경(안 제71조, 제81조, 제82조)

- 1)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신청 등 제출 서류 변경(사진 2장 → 사진 1장)

다. 건설기계검사조종사 면허번호의 부여 방법 보완(안 제72조)

- 1) 건설기계조종사 면허 추가 시에 부여하는 면허번호를 면허증을 교부하는 행정관청에서 관리가 용이하도록 면허부여 방법을 수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의견조치 예정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 전

3) 행정규제 : 협의 전

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사진 1장(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)

제72조 단서 중 “경우에 부여하는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면허번호로 하되,”를 “경우에는”으로 한다.

제8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사진 1장(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)

제82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사진 1장(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)

별표 18 비고 제5호 및 제6호 중 “5년”을 각각 “2년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2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36호서식 라목 중 “6개월”을 “신청일 전 6개월”로, “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(3.5cm×4.5cm) 2매”를 “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(3.5cm×4.5cm) 1장”으로 하고, 같은 서

식 가목 중 “1매”를 “1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43호서식 제2호 중 “신청일부터 6개월 내에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컬러사진(3.5cm×4.5cm) 2장”을 “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 (3.5cm×4.5cm) 1장”으로 한다.

국토교통부령 제1125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제2항 중 “보되,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까지 별표 18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야 한다”를 “본다”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 지정요건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당시 제74조제1항에 따라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·시설 또는 사업자는 별표 18의 개정 규정에 따른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.

건설기계사업자등록증 재교부신청서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즉시
신청인	성명(법인인 경우에는 상호 및 대표자)		
	생년월일		
	주소		
업종		등록 종류	
등록번호			
재교부신청 사유			

「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」 제65조의5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수수료	500원
-----	------

210mm×297mm[백상지(80g/㎡)]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71조(건설기계조종사면허)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	제71조(건설기계조종사면허) ①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<u>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2매</u>	4. <u>사진 1장(신청일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)</u>
②·③ (생략)	②·③ (현행과 같음)
제72조(건설기계조종사 면허번호의 부여)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을 교부하는 때에는 발급하는 시·군·구의 명칭, 교부연도, 연도별 일련번호 및 재교부 횟수가 표시되도록 면허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. 다만, 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사람이 종류가 다	제72조(건설기계조종사 면허번호의 부여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
른 면허를 추가로 받는 경우에
부여하는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
여한 면허번호로 하되, 이미 교
부한 면허증은 회수하고 새로운
면허증에 면허의 종류를 추가
기록하여 교부한다.

제81조(정기적성검사) ① (생 략)

② 제1항에 따라 정기적성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면허를 받은 날(건설기계조종사 면허를 2종류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종 면허를 받은 날을 말한다)의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매 10년(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)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별지 제43호서식의 건설기계조종사면허정기(수시)적성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(생략)

2. 6개월 이내에 촬영한 모자 벗
은 상반신 사진 2매

----- 경우에
는 -----

제81조(정기적성검사) ① (현행과
같음)

②

1. (현행과 같음)

2. 사진 1장(신청일 전 6개월 이
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
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

국토교통부령 제1125호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(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적용례 등) ① (생 략)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74조에 따라 소형건설기계조 종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· 시설 또는 사업자는 별표 18 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형건설기 계조종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춘 것으로 <u>보되, 이 규칙 시행 이후 6개월까지 별표 18의 개정 규정에 따른 소형건설기계조종 교육기관의 지정요건을 갖추야 한다.</u>	국토교통부령 제1125호 건설기계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5조(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기관 지정에 관한 적용례 등) ① (현 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본다.</u>
--	---